

섬유제품의 품질표시요령

공산품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에 규정한 품질표시 기준에 관한 섬유 제품의 품질표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목 적

본 요령은 공산품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 규정한 섬유제품의 품질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 의

2.1 [조성섬유]란 섬유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원료로서 다음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1) 단사에 있어서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

(2) 2본이상의 단사로 형성된 사는 그 각각의 사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

(3) 직물에 있어서는 경사와 위사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

(즉, 변사는 제외할 수 있다)

(4) 편직물 및 편제품에 있어서는 그것을 편성하고 있는 사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

(5)피복에 있어서는 겉감과 안감으로 사용된 직물 또는 편직물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즉 부속품은 제외할 수 있다)

2.2 [혼용율]이란 조성섬유가 1종 또는 2종 이상인 섬유제품에 있어서 각 조성섬유의 중량과 전조성섬유의 중량의 비율을 100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 때 혼용율은 정량혼용율로서 조성섬유의 중량은 한국공업규격 섬유류의 공정수분율일관표(KSK 0301)에 규정된 수분율을 포함시킨 것으로 한다.

2.3 [생지]란 직물 편직물 또는 레스로서 정리가공 여부에 관계없이 재단되기 이전의 원단의 상태를 말한다.

2.4 [거래단위]란 거래되는 섬유제품의 최소표시단위로서 다음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1) 면사, 스프사, 면방식합성섬유방적사 및 마사에 있어서는 치즈 또는 통

(2) 소모사, 방모사, 및 소모방식합성섬유방적사(스트레치사 및 벌키사는 제외함)의 타래제품은 직사에 있어서 226.8그램, 편사에 있어서 57.7그램

(3) 타래제품이 아닌 소모사, 방모사 및 소모방식합성섬유방적사에 있어서는 치즈 콘 또는 케이크(보올포함)

(4) 필라멘트사에 있어서는 타래, 콘, 치즈, 케이크 또는 관사

(5) 나일론 및 아크릴 등의 스트레치사 및 벌키사에 있어서 타래제품은 2.5kg 타래제품이 아닌 것은 치즈 코온 또는 케이크

(6) 견사(생사, 옥사, 견연사)는 타래 통 또는 표

(7) 견방사에 있어서는 치즈 콘 또는 타래

(8) 면봉사 견봉사 및 기타 봉사에 있어서는 타래 치즈 또는 관사

(9) 직물 또는 경편직물에 있어서는 필

(10) 레스직물에 있어서는 두루마리

2.5 [소모직물]이란 소모방식방적사로 제작된 직물을 말하며 관례상 변에 섬유의 혼용율을 표시하지 않는 후직은 여기서 제외한다.

2.6 [개성복]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미리 지어 놓은 의복으로서 다음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사복상하의

(2) 숙녀복상하의

2.7 [내의]란 직물 또는 편물로 된 속옷으로 다음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1) T-셔츠

(2) 폴로셔츠(스포츠셔츠 포함)

(3) 등내의

2.8 [인쇄된 표지]란 인쇄 날인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사항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재된 쪽지를 말한다.

3. 섬유 혼용율표시

3.1 섬유의 혼용율을 표시할 때에는 조성섬유의 종류를 나타내는 섬유의 명칭에 해당섬유의 혼용율을 병기하여야 한다.

3.2 섬유명칭의 표시는 별표 1에 기재한 통일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3 통일문자 이외의 섬유명칭을 표시코자 할 때에는 통일문자 다음 괄호 내에 병기하여야 한다.

3.4 조성섬유가 1종일 때에는 [순] [純] 또는 [All] 등의 표시로서 혼용율의 100분 표시를 약할 수 있다.

3.5 조성섬유가 2종이상일 때는 혼용율이 큰것부터 순차로 표시하여야 한다.

3.6 조성섬유중 혼용율이 5%이상일 때 또는 방모제품으로서 그 조성섬유의 일부가 불명일 때에는 기타로 표시할 수 있다.

3.7 장식용섬유로서 그 혼용율이 10퍼센트 이하일 때에는 이를 제외한 조성섬유를 100으로 하여 혼용율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장식용섬유제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3.8 소모직물에 있어서 그 변에 섬유의 혼용율제직 표시가 곤란할 때에는 제품이면에 전여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3.9 교직물에 있어서는 경사와 위사의 조성섬유를 각각 100으로 하여 혼용율을 경위사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3.10 파일직물 및 직모직물에 있어서는 그 지조직과 그외 부분의 조성섬유를 각각 100으로 하여 혼용율을 지조직과 그외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11 피복에 있어서는 겉감과 안감의 조성섬유를 각각 100으로 하여 혼용율을 겉감과 안감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12 조성섬유의 혼용율이 불명일 때에는 [혼용율불명]이라 표시할 수 있다.

3.13 혼용율의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된 혼용율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된 혼용율 시험방법(KSK 0210 0211 0212 및 02130에 따른다.

3.14 섬유의 혼용율 표시의 허용공차는 별표 2와 같다.

4. 변수 또는 데니어의 표시

4.1 변수 또는 데니어를 표시할 때에는 완성된 사의 섬도를 나타내는 변수 또는 데니어의 정수에 [수], [□] 또는 [s] 또는 [데니어]의 단위를 병기하여야 한다.(즉 소수점 1위까지 표시할 수 있다)

4.2 스트레치 또는 벌키가공한 합성섬유사에 있어서는 원사변수(방적변수)를 기준으로 하여 변수 또는 데니어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변수 또는 데니어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변수 또는 데니어 표시다음 괄호내에 [방적변수]라 병기하여야 한다.

4.3 잡사등 정상제품이 아닌것으로서 변수 또는 데니어의 표시가 곤란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잡사]라 표시하여야 한다.

4.4 변수 또는 데니어의 시험방법은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된 면사의 변수 측정방법(KSK 0414) 또는 필라멘트사의 섬도측정방법(KSK 0416)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4.5 변수 또는 데니어 표시의 허용공차는 별표3과 같다.

5. 폭의 표시

5.1 직물의 폭을 표시할 때에는 직물의 폭을 나타내는 정수에 [cm]의 단위를 병기하여야 한다.

5.2 폭의 측정은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된 직물의 폭측정방법(KSK 0505)에 따른다.

5.3 폭 표시의 허용공차는 별표4와 같다.

6. 치수 또는 호수의 표시

6.1 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복 및 기타 섬유제품의 치수를 표시할 때에는 별표5의 상품별 지음명세에 해당하는 치수를 센티미터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6.2 호수를 표시할 때에는 상품별로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된 치수에 대응하는 호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6.3 치수의 측정은 한국공업규격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다.

6.4 치수 표시의 허용공차는 별표6과 같다.

부 칙

본 공고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 일 문 자

섬유의 종류	통 일 문 자	
	국 문	영 문
면	면 또는 □	Cotton
모	모 또는 □	Wool
견	견 또는 □	Silk
마(아마 및 저마)	마 또는 □	Linen 또는 Ramie
비스코스섬유	인견, 비스코스 또는 人絹	Viscose
동암모니아섬유	큐프라	Cuprammonium
아세테이트섬유	아세테이트	Acetate
나일론 섬유	나일론	Nylon
폴리미널알콜계섬유	피브이 에이	P.V.A.
폴리염화비닐계섬유	피브이 씨	P.V.C.
폴리염화비니리덴계섬유	염화비니리덴	Vinylidene Chloride
폴리아크릴니트릴계섬유	아크릴	Polyacryl
폴리에스텔계섬유	폴리에스텔	Polyester
폴리프로필렌계섬유	폴리프로피렌	Polypropylene
폴리청화비니리덴계섬유	청화비니리덴 또는 靑化비니리덴	Polyvinylidene
폴리우레단섬유	폴리우레단	Polyurethane

비고 : 기타섬유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학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2>

혼 용 율 허 용 공 차

조성섬유가 1종인 경우	모제품 이외에 전섬유제품에 대하여 - 1% 모제품은 -3% [방모제품]이라 부기할 때에는 -5%
조성섬유가 2종이상인 경우	조성섬유의 종류에 관계없이 ±5% [허용공차 ±10%]라 부기할 때에는 ±10%

<별표 3>

번수 또는 데니어의 허용공차

사의 구분	허용공차
면 사	±3% 다만 콘텐사 면사는 ±4%
스프사 면방식합성섬유방적사	±3%
마 사	±15%
소모사	직사 ±4.5%, 편사 ±5.0%
방모사	직사 ±9.5%, 편사 ±7.0%
소모방식합성섬유방적사	원사 ±6%, 염색사 +6% -13%
생 사	28데니어이하 ±3% 28데이어초과~100데니어 ±5% 100데니어초과 ±10%
옥사 및 견연사	80데니어미만 ±15% 80데니어이상 ±20%
견방사	±9.5% -6%
인견 및 나일론 필라멘트사	40데니어미만 ±6.0% 40데니어이상 ±4.0%
스트레치나일론사	+9%
봉 사	면 봉 사 ±10% 마 봉 사 ±15% 견 봉 사 +5% -27% 장섬유봉사 ±6%
타이어코오드	±2.5%

<별표 4>

폭의 허용공차

직물의 구분	허용공차
면 직 물 (파일직물 제외) 스 프 직 물 면방식합성섬유방적사직물 마 직 물	+1.3cm -0.6cm
모 직 물	±2.5cm

소모 방식 합성 섬유 방적 사직물	
견 직 물 인 견 직 물 합 성 섬유 필 라 멘 트 사 직 물 교 직 물 자 수 직 물	+1.5cm -1.0cm
파일 직물(테리 직물 포함)	± 2.5cm
경 편 직 물	+3.0cm -2.0cm
세 폭 직 물	± 0.5cm
기 타 특 수 직 물	± 2.5cm

<별표 5>

치수의 표시사항

제품의 구분	치수의 표시사항
개 성 복 매 리 야 스 외 의 사 무 복 작 업 복 잠 옷 (스포츠셔츠 겨울내의에 한함)	상의에는 가슴둘레를 하의에는 허리 둘레를 표시한다.
드 레 스 블 라 우 스 스 웨 터 류 내 의 (T-셔츠, 폴로셔츠에 한함)	가슴둘레를 표시한다.
스 커 트	허리둘레를 표시한다.
와 이 셔 츠 류	목둘레와 소매길이를 표시한다. 다만 남방셔츠에는 목둘레만 표시한다.
코 오 트 류	가슴둘레와 총길이를 표시한다.
양 말	발바닥 길이를 표시한다. 다만 Free size는 제외한다.
장 갑	손바닥 길이를 표시한다. 다만 Free size는 제외한다.

<별표 6>

치수의 허용공차

지 음 명 세 의 구 분	허 용 공 차
가 승 둘 레 허 리 둘 레 총 길 이	직물을 원단으로 사용한 제품은 $\pm 2\%$ 편물이거나 편직물을 원단으로 사용한 제품은 $\pm 3\%$
목 둘 레	$\pm 0.5\text{cm}$ 다만 남방셔츠에 있어서는 $\pm 1.0\text{cm}$
소 매 길 이	$\pm 1.0\text{cm}$
발 바 닥 길 이 손 바 닥 길 이	$\pm 3\%$